

◎ 대통령령 제14,4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

(1994. 12.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객석면적”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0실 이상”을 “7실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집단급식소중 160제곱미터 이상인”을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포도매입, 종합소매업(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제1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역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본문중 “폐기물관리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기금의 용도 등)을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2조제6호”를 “법 제20조제6호”로 하며, 동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1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4,493호

하수도법 시행령중 개정령(1994. 12. 31)

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예정처리구역”을 각각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항제8호중 “건설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다목중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중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를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3호중 “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4호중 “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래식변소의 개조) 법 제9조의2 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2.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의 건축물

3. 수도시설이 없어 물의 공급이 곤란한 건축물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대지면적·구조 기타 사유로 수세식변소로 개조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건축물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 제3항중 “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계획한 수량을 배제할 수 있으며”를 “계획한 수량이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수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을 “하수량도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종말처리장”을 각각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종말처리장”을 각각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중 “배수설비 착공예정일 20일전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하수의 수질과 양)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1.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1호 가목 비고 및 나목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고,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에 해당하는 하수(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제20조중 “계획하수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중 “종말처리장에 관한 권한의 경우를”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권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가 도지사인 경우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환경부령”으로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24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중 5년이 경과된 시설은 95년 12월 31일까지, 기타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할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대통령령 제14,49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중 개정령(1994. 12. 3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등)”을“(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되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선부담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공공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1인 소유면적·지분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4.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3. 종교시설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의료시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시송달) 부과대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부과고지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중 “자동차는 반기별 8,100원으로 한다.”를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환경오염방지기금”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수한 개선부담금을 정수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가목 중 수질오염유발계수란의 “1.29”를 “1.00”으로 하며, 동표 제1호 및 제11호중 연료사용량란의 “60.00”을 각각 “37.00”으로 하고, 동표의 제3호중 연료사용량란의 “30.00”을 “14.00”으로 하며, 동표 비교의 제2호중 “기숙사·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사”로 한다.

2.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9.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계수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비고 : 1. 해당 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환경관리인. 1995. 2

적용한다.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2.07	1.00	0.68	0.67	0.57

비고 : 1. 해당 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다. 자동차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비고 : 1. 해당 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6의2]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제14조제2항 관련)

적용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부과금액 (원/반기)	12,150	20,250

비고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1996년 7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8,100원으로 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12,150원으로 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는 20,250원으로 한다.

◎ 법률 제4,906호

토양환경보전법(1995.1.5)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 제외)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처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애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처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측정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기준·범위·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과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및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환경처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또는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지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또는 토지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아야 한다.

제 9 조(손실보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

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처장관은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설치(이하 "토양오염방지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증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출입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의 설치·토양오염검사·기록부 비치의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인, 1995. 2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 대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등의 이전
2.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기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처장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결과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지정목적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방안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 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직할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 이용 등의 제한)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 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① 환경처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에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

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대집행)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률 제4,90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5. 1.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에 의하여 도전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 또는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전설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단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호의 공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개발된 공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업단지 또는 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업단지 또는 공장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납부할 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당해 공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처리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요규모
 3. 입지 선정기준
 4. 기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입지선정계획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입지선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⑥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① 환경처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
 3. 공사기간
 4. 폐기물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5. 설치기관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

립하여 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당해 계획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처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계획구역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 또는 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도시계획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의 해제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1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1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5.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7. 측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18.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시설의 목적의 사용의 승인

2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예상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 및 조정에 관하여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에 의한 알선 및 조정으로 본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환경관리인. 1995. 2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설의 준공인가)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승인한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이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공하거나 승인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완공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관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기 전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으로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상 영향기준에 의하여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0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체육시설·목욕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진입도로변 방진·방음시설·진입터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하도급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계·시공을 도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지역주민의 상주감시원 고용)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의 반입·적하·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환경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압축·파쇄·선별 등 감량화, 재활용, 퇴비화, 무해화처리, 소각, 매립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 등) 환경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1조(벌칙) ①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의 주요공정을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항하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②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처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 ③ (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 환경부고시 제1994-10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94-162	N-비닐카프로락탐 N-vinylcaprolactam (2235-00-9)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63	이소시아산 클로로술포닐 Chlorosulfonyl isocyanate (1189-71-5)	-유독물에 해당안됨 ○물과 반응시 염화수소가스가 발생하는 매우 강한 자극성물질이므로 사용 및 저장시 주의할 것
94-164	에텐일 2-프로펜산과 2-프로펜아미드, 2-프로펜니트릴과 2-프로펜산 부틸에스테르와의 중합물 2-propenoic acid butylester polymer with ethenyl 2-propenoate, 2-propenamide and 2-propenenitrile (35561-64-9)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65	3,6-비스((1,1-디메틸에틸)페닐)-2,5-디히드로-피롤로(3,4-c)피롤-1,4-디온 3,6-bis((1,1-dimethylethyl)phenyl)-2,5-dihydro-pyrrolo(3,4-c)pyrrole-1,4-dione (84632-59-7)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66	<총칭명> 알켄일 카르복시산과 알킬아크릴산 중합체의 암모늄 염 Alkenyl 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yl acrylate, ammonium salt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94-167	<총칭명> 알켄일 카르복시산과 알켄일 카르보모노시클 중합체의 암모늄 염 Alkenyl 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yl carbomonocycle, ammonium salt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68	N,N'-(9,9', 10,10'-테트라히드로-9,9', 10,10'-테트라옥소(1,1'-비안트라센)-4,4'-디일)비스도데칸아미드 N,N'-(9,9', 10,10'-Tetrahydro-9,9', 10,10'-tetraoxo(1,1'-bianthracene)-4,4'-diyl)bis dodecanamide (136897-58-0)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69	4-모르폴린프로판 산, 옥시비스(2,1-에탄디일옥시)-2,1-에탄디일에스터 4-Morpholinepropanoic acid, oxybis(2,1-ethanediyloxy)-2,1-ethanediyloxy ester (71487-08-6)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70	<총칭명> 염화 프로펜일 헤테로모노시클로 화합물 Propenyl heteromonocyclic, chloride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71	(μ-3-((4'-((6-(벤조일아미노)-1-히드록시-3-술포-2-나프탈렌일)아조)-3,3'-디히드록시(1,1'-비페닐)-4-일)아조)-4,5-디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술포나토(7-)) 디큐프레이트의 트리나트륨 (μ-3-((4'-((6-(Benzoylamino)-1-hydroxy-3-sulfo-2-naphthalenyl)azo)-3,3'-dihydroxy(1,1'-biphenyl)-4-yl)azo)-4,5-dihydroxy-2,7-naphthalene disulfonato(7-))) dicuprate(3-)trisodium (75284-35-4)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72	2', 3'-디클로로-4-에톡시메톡시벤조아닐리드 2', 3'-Dichloro-4-ethoxymethoxybenzanilide : Etobenzanid (79540-50-4)	-유독물에 해당안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4-10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지정

지정번호	화 학 물 질 명
469	비스(2-에틸헥실)아민 (Bis(2-ethylhexyl)amine) (106-20-7)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4-109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5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95수질측정망설치운영계획

1. 설치목적 : 전국의 하천, 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파악
 2. 측정망 설치시기 : 1995년 1월 1일부터
 3. 측정망 설치현황
- 수계별 측정망 수

구 분	계	하천수	호소수	상수원수	농업수용수	공단배수	도시관류
계	1,379	519	141	497	100	70	52
한 강	365	188	31	117	17	8	4
낙동강	280	98	21	108	21	11	4
금 강	165	77	11	55	13	6	3
영산강	63	23	11	18	6	5	-
섬진강	47	16	10	16	5	-	-
기 타	459	117	57	183	38	40	24

○측정망 배치도 : 생략

4. 기타 : 수질측정망 설치와 관련한 설치위치, 조사항목 등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02·504-92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 제1995-1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시설을 오수정화시설로 지정 고시합니다.

1995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오수정화시설지정

1.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방법

○침전 및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전처리설비·생물학적처리설비(토양피복형 접촉산화방법을 이용하는 설비를 말함

다)·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합하여 만든 시설

○세부설치기준

구 분	세 부 사 항	비 고						
스크린	(1) 파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간격 50밀리미터 정도의 조목스크린을 파쇄장치 앞에 설치하고 유효간격 20밀리미터 정도의 세목스크린을 갖춘 예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간격 50밀리미터의 조목스크린과 유효간격 20밀리미터 정도의 세목스크린을 2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침전분리조	(1)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2) 유효용량은 1일 오수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표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d>$Q \leq 20$</td> <td>$V = 1.5Q$</td> </tr> <tr> <td>$20 < Q \leq 40$</td> <td>$V = Q + 10$</td> </tr> <tr> <td>$Q > 40$</td> <td>$V = 0.9Q + 14$</td> </tr> </table> <p>※ V : 유효용량(세제곱미터) Q : 1일 오수처리용량(세제곱미터)</p>	$Q \leq 20$	$V = 1.5Q$	$20 < Q \leq 40$	$V = Q + 10$	$Q > 40$	$V = 0.9Q + 14$	
$Q \leq 20$	$V = 1.5Q$							
$20 < Q \leq 40$	$V = Q + 10$							
$Q > 40$	$V = 0.9Q + 14$							
접촉폭기조	(3) 제1실의 유효용량은 총유효용량의 3분의 2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쇄석부분은 2분의 1을 유효용량에 가산하여야 한다. (4) 유효수심은 2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각 실의 유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여야 하고, 침전오니를 교란시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각 실의 유출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로 하여야 하고, 부상물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펌프로 침전분리조에 오수를 이송하는 경우 펌프의 1일 송수용량은 1일 오수처리용량의 2.5배 이상이 되게 하고, 펌프조는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유입수의 용량변동이 클 경우에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상부에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쇠석층을 설치하되, 20센티미터 이상이 물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1)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오수가 장시간 접촉계에 접촉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사항	비고
	<p>(2) 유효용량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이 0.5킬로그램/세제곱미터·일이 하가 되게 하고, 1일 오수처리용량의 5분의 2이상의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쇄석부분은 2분의 1을 유효용량에 가산하여야 한다.</p> <p>(3) 제1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이 0.8킬로그램/세제곱미터·일이 하가 되게 하고, 유효용량은 총 유효용량의 5분의 3으로 하여야 한다.</p> <p>(4) 유효수심은 2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5) 유효용량에 대한 집축재의 충전율은 5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6) 집축재는 생물막에 의하여 폐쇄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충전하고 생물막이 부착하기 쉬운 형상의 직경 10센티미터 내지 15센티미터 크기의 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p> <p>(7) 폭기장치를 설치하여 조내의 오수에 산소가 균등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용존산소가 1밀리그램/리터 이상 유지되도록 산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박리오니를 오니농축조 또는 오니농축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8) 쇄석층은 조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정도 이격하여 산기관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저부에 오니가 쌓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최종침전조	<p>(1) 조의 수면적부하는 30세제곱미터/제곱미터·일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월류벽을 설치하여 침전조에서 오수가 월류하는 구조로 하고, 월류부하는 30세제곱미터/제곱미터·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3) 유효수심은 1.5미터(1일 오수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의 저부가 흠바형일 때는 흠바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유효수심에 가산하여야 한다.</p> <p>(4) 1일 오수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평면의 형상을 원형 또는 정다각형으로 하여야 한다(정삼각형 구조는 제외한다).</p> <p>(5) 흠바의 구배는 수평면에 대하여 60도 이상으로 하고, 오니를 한곳으로 집적시켜 자동적으로 뽑아내어 오니농축조 또는 오니농축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오니반송은 필요하지</p>	

구분	세부사항	비고
	<p>아니함.)</p> <p>(6) 상부에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쇄석층을 설치하되 20센티미터 이상이 물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쇄석부분은 2분의 1을 유효용량에 가산하여야 한다.</p>	
오니농축저류조	<p>(1) 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을 침전 분리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유효용량은 유입오니량과 농축오니의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적합한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p> <p>(2) 오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3) 상부에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쇄석층을 설치하되 20센티미터 이상이 물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p>	1일 오수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오니농축조	<p>(1) 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은 침전 분리조로, 농축된 오니는 농축오니저류조에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2) 유효용량은 유입오니량과 농축오니의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유효수심은 2미터 이상 4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3) 상부에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쇄석층을 설치하되 20센티미터 이상이 물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p>	1일 오수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농축오니저류조	유효용량은 농축오니의 유입과 반출계획을 감안하여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농축오니의 이송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하며, 탈리액을 침전분리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오니농축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2집축폭기조	<p>(1) 오수가 장시간 집축재에 접촉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2) 유효용량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이 0.1킬로그램/세제곱미터·일이 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p> <p>(3) 기타 사항은 집축폭기조와 동일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p>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밀리그램/리터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고, 최종침전조 다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집축여과조	<p>(1) 오수가 장시간 집축재에 접촉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2) 유효용량은 1일 오수처리용량의 8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p> <p>(3) 쇄석층은 조의 바닥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4) 기타 사항은 집축폭기조와 동일한 구조</p>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밀리그램/리터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

구분	세부사항	비고
	로 하여야 한다.	하고, 제2접촉폭기조의 다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구조 (각조 공통 적용)	<p>(1) 조의 천정은 토양피복형 구조로 하되, 양질토 80퍼센트와 토양미생물을 배양한 유기질 혼합물(컴포스트) 20퍼센트로 혼합조성된 다공질토양을 사용하여야 한다.</p> <p>(2) 토양피복방법은 산형으로 쌓은 쇠석상부에 모관망(망목 2밀리미터 이내의 폴리에틸렌 재질)을 깔고 그 위에 제1호의 다공질토양을 높이 30센티미터 이상 피복한 후 잔디를 심어 탈취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각 조의 외벽 및 내벽구조물은 원지반 높이까지 설치하고 그 위에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토양을 피복하여 주변 토양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4) 쇠석을 지지하는 하부의 쇠석받침대는 쇠석 및 상부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고, 쇠석받침대간의 간격은 10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p>	

2. 모관침윤트렌치방법

○침전 및 혐기성생물학적처리방법과 모관침윤트렌치방법에 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토양식부패조(침전분리조, 접촉여과조, 침전여과조), 모관침윤트렌치시설 및 그 부대설비를 조합하여 만든 시설

○세부설치기준

구분	세부사항	비고
토양식부패조	<p>(1) 침전분리조, 접촉여과조, 침전여과조를 직렬로 접속하여야 하고, 총유효용량은 1일 오수처리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쇄석층부분은 2분의 1을 유효용량에 가산하여야 한다.</p> <p>(2) 침전분리조의 유효용량은 총 유효용량의 2분의 1로 하고, 접촉여과조 및 침전여과조의 유효용량은 각각 총유효용량 3분의 1 및 6분의 1로 하여야 한다.</p> <p>(3) 각 조의 유효수심은 2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4) 각 조의 유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3분의 1 깊이로 하고, 유출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2분의 1 깊이로 하여야 한다.</p>	

구분	세부사항	비고
	<p>(5) 조의 천정은 토양피복형 구조로 하되, 양질토 80퍼센트와 토양미생물을 배양한 유기질 혼합물(컴포스트) 20퍼센트로 혼합·조성된 다공질토양을 사용하여야 한다.</p> <p>(6) 토양피복방법은 산(山)형으로 쌓은 쇠석상부에 모관망(망목 2밀리미터 이내의 폴리에틸렌 재질)을 깔고 그 위에 제 5호의 다공질토양을 높이 39센티미터 이상 피복한 후 잔디를 심어 탈취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7) 각 조의 외벽 및 내벽구조물은 원지반 높이까지 설치하고, 그 위에 토양을 피복하여 주변 토양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8) 침전분리조의 쇠석층은 20센티미터 이상 물에 잠기도록 하고, 접촉여과조의 쇠석층은 조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침전여과조의 쇠석층은 조의 바닥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를 각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9) 쇠석을 지지하는 하부의 쇠석받침대는 쇠석 및 상부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고, 쇠석받침대간의 간격은 1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모관침윤트렌치	<p>(1) 토양식 부패조에서 1차 처리된 오수는 분수조에서 모관침윤트렌치의 각 열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분수조는 콘크리트 또는 강화프라스틱 재질로 설치하되 토압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p> <p>(2) 트렌치의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폭은 3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종방향의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p> <p>(3) 트렌치바닥은 요철이 없게 잘 고른 후 불투수막을 깔고 트렌치 측벽면을 따라 약 10센티미터 높이로 <input type="checkbox"/>모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4) 불투수막 위에 모래를 높이 15센티미터로 채우되 위면은 중앙이 오목하게 되도록 하고, 그 위에 직경 100밀리미터의 산수관(토관, 염화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유공관)을 설치하되 산수관 주위에는 자갈을 높이 10센티미터로 피복하고, 그 위에 모관망을 덮은후 양질토 80퍼센트와 토양미생물을 배양한 유기질 혼합물(컴포스트) 20퍼센트로 혼합·조성된 토양을 원지반 높이까지 덮고 잔디를 식재하여야 한다.</p>	

구분	세부사항	비고
	<p>(5) 토관은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소켓부분이 트랜치 끝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해야 하며, 염화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유공관을 사용할 경우 구멍의 크기는 직경 3밀리미터 이상, 구멍간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p> <p>(6) 트랜치는 아래 공식에 의거 산출된 값보다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p> $L \geq Q \times C \times F$ <p>여기서, L : 모관침윤트랜치 총연장(미터)</p> <p>Q : 1일 오수처리용량(세제공미터/일)</p> <p>C : 산수계수(오수 1세제공미터당 10미터)</p> <p>F : 교대 사용계수(1.5-2.0)</p> <p>※ 교대사용 계수는 통상 2.0으로 적용(트랜치의 2분의 1를 6개월씩 교대사용)하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0밀리그램/리터 이하 또는 자동휴식기를 갖는 경우(관광지, 야영지, 해수욕장 등)에는 1.5로 적용(1개월마다 교대로 4개월의 휴식기를 갖도록 하고, 연간 8개월 가동)할 수 있다.</p> <p>(7) 산수관 상호간의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하고 트랜치 1열의 길이는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8) 트랜치는 1년에 6개월 이상 휴식기를 갖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입수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밀리그램/리터 이하이거나 관광지, 야영장, 해수욕장 등 계절적으로 오수량 변화가 심한 지역은 자연적으로 휴식기를 가지므로 1개월마다 교대로 6개월의 휴식기를 갖도록 하고 연간 8개월까지 가동할 수 있다.</p> <p>(9) 처리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1개소 이상의 처리수 채수용 검수조를 설치(트랜치를 분산설치할 경우에는 각각 1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깊이의 트랜치 하부에 폭 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의 장방형의 불투수막을 깔고 그 위에 높이 30센티미터의 자갈을 채운 후 모관망을 덮고 흙을 다시 매운 다음 상부에 트랜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수된 물은 파이프와 맨홀을 설치하여 채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p> <p>(10) 트랜치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지하수위가 지표면에서 깊이 1.5미터 이상</p>	

구분	세부사항	비고
	<p>이어야 하고, 우물 또는 상수원으로 부터 수평거리 3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지표면 아래 1.5미터 이내에 자갈층 퇴적지나 암반이 있어서는 아니된다.</p> <p>(11) 토질 투수시험결과, 투수계수가 5×10^{-2}센티미터/초 내지 4.5×10^{-4}센티미터/초인 토질이어야 하고, 점토 또는 자갈층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면 아래 1.5미터의 흙을 양질토로 치환하고 처리수 배수를 원활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현장투수시험을 2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직경 30cm, 깊이 60cm의 구멍을 파고 하단에서 25cm까지 물을 채운 후 수위가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p> <p>(12) 지하수 오염 등을 고려하여 1개 단위시설당 처리용량 50세제공미터/일 이하가 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단위시설간에는 직전거리 30미터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다만, 모관침윤트랜치의 유입수질이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이거나 중수로 재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4-11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94-173	폴리(이소부텐일)숙신산 무수물과 N,N-디에틸아미노에탄올의 반응물 Poly(isobutenyl)succinic anhydride product with N,N-diethylaminoethanol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74	에텐일벤젠, 2-프로펜산, 2-프로펜산 부틸 에스테르, 2-프로펜산 1,1-디메틸에틸에스테르와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2-메틸-프로펜아미드의 중합체 Ethenylbenzene polymer with 2-propenoic acid, 2-propenoic acid butyl ester, 2-propenoic acid 1,1-dimethylethyl ester, N-(3-(dimeth-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yl amino)propyl)-2-methyl-propenamide	
94-175	2-프로펜산과 차아인산 나트륨 중합물의 마그네슘 나트륨염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sodium hypophosphite magnesium sodium salt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76	7-[[4-클로로-6-(도데실아미노)-1,3,5-트리아진-2-일]아미노]-4-히드록시-3-[[4-[[4-술포페닐)아조]페닐)아조]-2-나프탈렌술포산 이나트륨 Disodium 7-[[4-chloro-6-(dodecylamino)-1,3,5-triazin-2-yl]amino]-4-hydroxy-3-[[4-[[4-sulphophenyl)azo]phenyl)azo]-2-naphthalene sulfonate (145703-76-0)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77	2-히드록시프로판산과 7-[[4,6-비스[[3-(디에틸아미노)프로필]아미노]-1,3,5-트리아진-2-일]아미노]-4-히드록시-3-[[4-(페닐아조)페닐)아조]-2-나프탈렌술포산 아세트산(염)의 화합물 2-Hydroxypropanoic acid compd. with 7-[[4,6-bis[[3-(diethylamino)propyl]amino]-1,3,5-triazin-2-yl]amino]-4-hydroxy-3-[[4-(phenylazo)phenyl)azo]-2-naphthalenesulfonic acid acetate(salt)	○유독물에 해당안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5-4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1-62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5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분뇨처리시설 지정고시중 개정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 본다.

◆ 회보 협력업체 명단 ◆

- 강남산업(주)(휠터백)
- 송원산업(주)(웅집제)
- 천세산업(주)(계측기/전극봉)
- (주)그린기술산업(방지사설업)
- 씨스텍엔지니어링(환경기기)
- (주)키스트엔지니어링(수처리기기)
- 남경어드벤처(주)(산화장치)
- 엔바트로닉스(주)(유량계)
- 키위마케팅(탈수기류)
- 대양상사(계측기류)
- 영일화학공업(주)(중금속포집제)
- 태기공업(주)(방지사설업)
- 동광환경(주)(방지사설업)
- 웅진과학무역(실험실기기)
- 푸른환경(약품)
- 동아계측기기(탈수기/계측기)
- 원엔지니어링(주)(소각로)
- 하이테크과학상사(계측기기)
- 동양기전(주)(퇴비화장치)
- 유공유체산업(주)(여과포)
- 한국듀폰(필터)
- 동양나이론(주)(약품)
- 유니슨산업(주)(집진기/필터)
- 한국바스텍(웅집제주입장치)
- 동양물산(주)(퇴비화건조기)
- (주)유니온(여과기)
- (주)한국EP(집진기)
- 동양화학(주)(방지사설업)
- 유천엔바이로(필터류)
- 한미브로와(블로워)
- 럭키디씨실리콘(주)(소포제)
- 이삭환경(방지사설업)
- 한성엔지니어링(방지사설업)
- 바투엔지니어링(흡착제)
- 이양화학(주)(미생물처리제/웅집제)
- 한솔화학(주)(웅집제)
- (주)보명플랜트(방지사설업)
- 일진환경개발(탈수기)
- (주)한수(수처리약품)
- 블루웨일스크린(스크린제작)
- (주)정엔지니어링(TMS/계측기)
- (주)호정엔지니어링(탈수기)
- (주)삼천리(방지사설업)
- 조양기술개발(주)(소각로)
- 새한환경(주)(방지사설업)
- 지성실업(약품/계측기)
- 서울엔지니어링(전기집진기)
- 진도종합건설(주)(소각로)

○가나다순